계약직원 관리규칙

제정 2009. 7.27 개정 2009. 12. 24 개정 2010. 3.19 개정 2010. 7. 1 개정 2010. 11. 1 개정 2012. 5.17 개정 2012. 9.24 개정 2014. 2.20 개정 2015. 3.21 개정 2015. 8.20 개정 2016. 1.29 개정 2016. 12. 29 개정 2018. 5. 24 개정 2018. 12. 27 개정 2019. 9.11 개정 2019. 11. 15 개정 2019. 12. 29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계약직 직원의 인사, 급여,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. 단, 공무직의 인사, 급여 등에 관하여는 공무직 운영규칙을 우선 적용한다. <개정 2010.7.1., 2018.12.27.>

제3조(계약직의 종류)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일반계약직 :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<개정 2015.8.20>
- 2. 전문계약직 : '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<개정 2012.5.17.><개정 2016.1.29.>
- 3. 공무직 : 민원, 서무, 미화, 전산, 시설관리,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<신설 2018.12.27.>
- 4. 위촉계약직 :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
- 5. 임시계약직 :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
- 6. 초빙연구위원 : 해당 분야의 전문가(교수, 기술사 등)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

제4조(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) <삭제 2010.7.1>

- 제5조(채용절차) ① 전문계약직,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10.7.1>
 - ② 초빙연구위원,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[별지 제1호] 채용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.<개정 2010.7.1.>
 - ③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.<개정 2015.8.20>
- 제6조(계약기간) ①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진흥원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계약연장 요청서, 직무능력 평가표 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.<개정 2019.9.11>
 - ③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,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1.><개정 2016.1.29>
 - ④<삭제 2010.7.1.>
 - 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2.9.24.>
 - ⑥제1항,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29>
- 제6조의2(일반계약직 전환) ① 원장은 상시·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계약직,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,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.<개정 2016.1.29., 개정 2019.11.15>
 - ②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9>
 - ③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,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 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.<신설 2012.9.24.><개정 2016.1.29>

-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.<신설 2016.1.29.>
- 제7조(직급 및 직호)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.
- **제8조(근로계약서)** ① 전문계약직 직원은 [별지 제5-1호]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.<개정 2010.7.1>
 - ② 위촉계약직 직원은 [별지 제5-2호]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.<개정 2010.7.1>
 - ③ 임시계약직 직원은 [별지 제5-3호]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.<개정 2010.7.1>
 - ④ 일반계약직 직원은 [별지 제5-4호]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.<신설 2016.1.29>
 - 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<개정 2016.1.29>
- 제9조(근로계약 해지) 원장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
 - 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
 - 3.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
 - 4.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5.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
- **제10조(성과평가)** ①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.<개정 2015.8.20>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,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.<개정 2015.8.20>
- 제11조(급여) ①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후, [별표 제1호]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.<개정 2010.7.1><개정 2015.8.20>
 - ②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진흥원의 급여지급일로 한다.
 - ③ 위촉계약직은 [별표 제2호]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<신설 2010.7.1>
 - ④ <삭제 2015.3.21>
 - ⑤ <삭제 2015.3.21>
- 제12조(복무) ①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

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.

- ②계약직 직원은 진흥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, 휴직·복직·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2010.11.1>
- ③ 계약직 직원은 진흥원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.

제13조(기타)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.

부칙<2009. 7. 2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(舊)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계약직 직원과 2007년 12월 3일 이전에 입사한 (舊)한국인터넷진흥원 고용계약직 직원은 제6조제4항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.

부칙<2009. 12. 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0. 3. 1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 7. 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계약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반계약직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.

부 칙 <2010. 11. 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5.17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9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9월 24일자로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계약직 직원 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11년 11월 28일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 칙 <2014. 2.20>

제1조(시행일) [별표 제1호] 위촉계약직 및 불법스팸상담센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기본월급여 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 <2015. 3. 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.12.30.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8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 1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계약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위촉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현 재직자의 계약만료 ('17.10.31) 이후 전부 삭제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6. 12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 5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 12. 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9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11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12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채용 요청서

수 신 : 인사담당

성 명		소속부서	
계약기간		계약구분	
기 타(급	근무구분, 계약연장 등)		
<직무내역>			
<특기사항>			
-에시-기무>		-에사하이>	
<예산과목>		<예산확인>	

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부서장(실·본부장) (인)

[별지 제2호] <삭제 2010.7.1>

[별지 제3호] <삭제 2010.7.1>

[별지 제4호] <삭제 2010.7.1>

근 로 계 약 서 (초빙연구위원)
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이하 ' 다.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디		(이하 "을"이라 힌
제1조(근무부서 및 담당직무) "을"의 근	무부서와 직무내용은 "갑"이	정한다.
제2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년 월 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		
제3조(근무기간 및 휴게) 1 일의 근무시간 제외하고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		간(12:00 ~ 13:00)을
제4조(근무일 및 휴일) 1 주일간의 근무일 무급휴무일로 한다.	일은 일(월요일~금요일)로 전	하고, 매주 토요일은
제5조(휴가)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	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	
제6조(급여) "을"의 급여는 월정액 금 까지 산정)에 "을" 명의의 예금계좌로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공	직접 지급한다. 급여에는	
제7조("을"의 임무) "을"은 다음 사항을 1.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, 맡은 2. 진흥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	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	
제8조(계약해지)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 "을"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	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	· 당되는 경우에 "갑"은
제9조(기타)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	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	한 바에 따른다.
	년 울	일 일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갑) (인)	성 명(을)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	(인)

근 로 계 약 서 (전문계약직)
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다.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처	•	난다.)과	_(이하 "을"이라 한
제1조(근무부서 및 담당직무) "을	:"의 근무부서와	직무내용은 "갑"이	정한다.
제2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			
제3조(근무기간 및 휴게) 1 일의 중 제외하고 09:00부터 18:00까지를		으로 하되, 휴게시?	간(12:00 ~ 13:00)을
제4조(근무일 및 휴일) 1주일간의 무급휴무일로 한다.	근무일은 5일(월	실요일~금요일)로 ㅎ	· 고, 매주 토요일은
제5조(휴가) 휴가에 관한 사항은	근로기준법에 정	하는 바에 따른다.	
제6조(급여) "을"의 급여는 연간 산정)에 "을" 명의의 예금계좌로		하고, 매월 20일(초일부터 말일까지
제7조("을"의 임무) "을"은 다음 <i>/</i> 1.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2. 진흥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	, 맡은 바 직무를	성실히 수행하여	
제8조(계약해지) 계약직원 관리규 "을"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		내지 제5호에 해당	되는 경우에 "갑"은
제9조(기타)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	기 아니한 사항은	근로기준법에 정현	한 바에 따른다.
		년 월	일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갑)	(인)	성 명(을) : 주민등록번호 :	(인)

주 소 :

근 로 계 약 서 (위촉계약직)
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이하 "갑"여다.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	ll라 한다.) 과	_(이하 "을"이라 한
제1조(근무부서 및 담당직무) "을"의 근무부	서와 직무내용은 "갑"이	정한다.
제2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년 월 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2		
제3조(근무기간 및 휴게) 1 일의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	8시간으로 하되, 휴게시간	'┴(12:00 ~ 13:00)을
제4조(근무일 및 휴일) 1 주일간의 근무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.	5일(월요일~금요일)로 ㅎ	·고, 매주 토요일은
제5조(휴가)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	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
제6조(급여) "을"의 급여는 월정액 금 까지 산정)에 "을"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		20일(초일부터 말일
제7조("을"의 임무) "을"은 다음 사항을 준수 1.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, 맡은 바 ^구 2. 진흥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(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(
제8조(계약해지)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 "을"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	세1호 내지 제5호에 해당	되는 경우에 "갑"은
제9조(기타)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/	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현	한 바에 따른다.
	년 월	일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갑) (인)	성 명(을)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	(인)

근 로 계 약 서 (임시계약직)
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다.)	<u>(</u> 이하 "갑"이라 현	<u></u>	(이하	"을"이라 한
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	한다.			
제1조(담당직무) "을"의 직무내용	은 "갑"이 정한다.			
제2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				
제3조(급여) "을"의 급여는 일 금	원으로	한다.		
제4조("을"의 임무) "을"은 다음 1.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2. 진흥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	, 맡은 바 직무를	성실히 수행하여		
제5조(계약해지) 계약직직원이 계 경우에 "갑"은 "을"과의 계약을		제9조 제1호 내	지 제5호	[에 해당되는
		년	월 열	일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갑)	(인)	성 명(을)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		(인)

근 로 계 약 서 (일반계약직)
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이하 "갑 다.)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	"이라 한다.)과	_(이하 "을"이라 현
제1조(근무부서 및 담당직무) "을"의 근무	부서와 직무내용은 "갑"이	정한다.
제2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년 월	일부터 년 월	일까지로 한다.
제3조(근무기간 및 휴게) 1 일의 근무시간은 제외하고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	은 8시간으로 하되, 휴게시긴	<u>ŀ</u> (12:00 ~ 13:00)을
제4조(근무일 및 휴일) 1 주일간의 근무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.	은 5일(월요일~금요일)로 히	-고, 매주 토요일은
제5조(휴가)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	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	
제6조(급여) "을"의 급여는 연간 산정)에 "을"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저 급한다.)		
제 7조("을"의 임무) "을"은 다음 사항을 준 1. 진흥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, 맡은 비 2. 진흥원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변	·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(
제8조(수습부여) "을"은 계약일로부터 3개 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	l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ㅎ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	부족하다고 인정
제9조(기타)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	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	<u>.</u> 바에 따른다.
	년 월	일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(갑) (인)	성 명(을)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	(인)

계약연장 요청서

성 명		소속부서	
계약구분		입사일	
기존 계약기간	① (1차) ② (2차)		
연장 계약기간			
<직무내역> □ o			
<연장사유> □ o			

상기인의 계약기간을 연장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팀장 (인)

직무능력 평가표

□ 평가대/

성 명	소속팀	
근로계약기간		

□ 평가항목 및 배점표

I	III H				평가	결과		
평가 세부 항목 항목		평가내용	배점		평가점수			
	0 1		-11 -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직무	의사소통	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,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	25점					
^{식구} 수행 능력	책임·성실성	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성실히 처리	25점					
	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, 배려할 수 있는 자세		25점					
직무	- 수행태도	지각, 무단결근, 고객 불친절, 징계, 경고, 장시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	25점					
자격증(가점)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		최대 10점						
	합 계							
	팀장						(서 5	명)

※ 평가항목, 배점은 평가대상자의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수정·변경 가능

□ 추기) 의견			

[별표 제1호]<개정 2009.12.24, 2010.7.1, 2010.11.1., 2012.9.24., 2014.2.20., 2015.3.21., 2016.12.29., 2018.5.24., 2020.12.29.,>

급여산정표

구 분	월 급 여
초빙연구위원	3,500천원(주3일 근무시)
위촉계약직	1,400천원+(환산경력×100천원)
임시계약직	1일 60,240원

- ※ 학사과정 재학생은 고졸로 처우하되, 수학기간을 환산경력으로 인정
- ※ 공무직 대체직원의 경우 별도 환산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, 월급여는 공무직 운영규칙 [별표3] 직무별 기본급을 준용함<신설 2020.12.29>
- ※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함 <신설 2020.12.29>

[별표 제2호]<신설 2010.7.1>

위촉계약직 직원의 수당

구 분	지 급 대 상	지 급 기 준	비고
가 족 수 당	부양가족이 있는 자	o 부양가족 당 30,000원/월	・사내부부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 ・급여규정 및 급여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
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 당	정상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자	o 통상임금 × 1.5÷209 × 시간외 및 휴일근무시간수	·급여규정 및 급여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
연 차 수 당	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	o 통상임금 × 1 ÷ 209 × 8 × 미사용 연차휴가일수	

※ 연구활동비, 중식보조비, 차량보조비(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)는 급여에 포함됨